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은 협성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 【편입학】 ①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2학기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전공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3학기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전공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학대학원 신학과에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기과정에 따라 3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4.)
2.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기에 따라 1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예술대학원의 전 과정에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기에 따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4.)(개정 2014.6.30.)

③편입학생의 인정학점은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에 의하여 인정받은 학점에 대해서는 학적부에 “전적대학원 성적에 의거 ○○학점 인정” 으로 기재한다.

제3조 【재입학】 ①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서와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③재입학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은 인정하고 졸업에 필요한 자격에 관하여는 재입학하여 수강중인 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④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재학연한 경과로 제적된 자

제3장 등록

제4조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2. 4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4장 수업과 성적

제5조 【교과목 변경 및 개설】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을 변경 및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개시 30일전에 변경 및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 【수강신청 및 변경】 ①학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F"처리 되며, 임의로 변경하여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교차수강】 대학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의 교차수강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신학과는 신학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교차수강할 수 있다.
2. 신학대학원은 대학원 개설과목 중에서 한 학기에 6학점까지 교차수강할 수 있다.

(조신설 2013.6.14.)

제6조의3 【선수과목 지정】 대학원 신학과 석사과정 및 신학대학원 학생은 다음과 같은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헬라이어(또는 유사과목)와 히브리어(또는 유사과

목)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기초헬라어와 기초히브리어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 신학대학원 4학기 과정의 경우, 목회실습 과목(현대목회입문, 목회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7.19.)

3. 신학대학원 6학기 과정의 경우, 선수과목(9과목 - 구약성서의 이해, 신약성서의 이해, 교회사, 기독교교육개론, 조직신학, 사회와 윤리, 선교와 문화, 목회와 상담, 예배와 설교), 목회실습과목(4과목 - 현대목회입문, 웨슬리텍스트, 목회실습1, 목회실습2)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개정 2017.7.13.)(조신설 2013.6.14.)

제6조의4 【과목이수면제】 ①과목이수면제 신청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하여야 한다.

②본 조에 의해 과목이수면제 된 경우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학적부에는 “P” 로 표시한다.

③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학생이 대학 및 전적대학원에서 헬라어(또는 유사과목)와 히브리어(또는 유사과목) 과목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심의를 거쳐 과목이수면제를 받을 수 있다.

(조신설 2013.12.4.)

제6조의5 【타 대학 교류학점 신청】 ①대학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학생은 학기 중 본 대학교와 학점교류 협정이 맺어져 있는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타 대학 교류 학점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학점교류 협정서에 따른다.

③위 항에도 불구하고 교단필수과목의 인정은 감리교단 3개 대학간의 교류과목에 한한다.

(조신설 2016.5.4.)

제7조 【수강과목 철회】 ①학생은 수강 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정해진 소정의 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의 서명을 받아 수강과목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강철회과목은 “W” 로 표기한다.

제8조 【예배 및 목회실습】 대학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의 예배(채플)와 목회실습에 대하여는 「예배와목회실습규정」에 따른다.

제9조 【성적평가 및 정정】 ①학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 결과는 담당 교·강사가 직접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지정된 기일 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생이 성적확인후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소정 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담당 교·강사는 이를 검토한 후 정정할 수 있다. 단, 정정 결과를 각 대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성적은 전산오류 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제10조 【재수강】 재수강을 하였을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 처리는 성적이 높은 과목으로 인정하고 낮은 성적의 과목은 성적표상에 재수강 표기(R)를 한다.

제5장 학위수여, 학위논문 및 자격시험

제11조 【특수대학원 학위수여 조건 중 논문대체 방법】 (조삭제 2014.12.3.)

제12조 【자격시험의 종류】 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중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의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각 대학원의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13조 【종합시험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 : 15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3학기이상 재학 중인 자(수료자 중 논문등록자 포함)(개정 2013.6.14.)(개정 2014.6.30.)(개정 2016.5.4.)
2. 대학원 박사과정 :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수료자 중 논문등록자 포함)(개정 2013.12.4.)(개정 2016.5.4.)
3. 신학대학원 : 4학기과정은 26학점, 6학기과정은 6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4학기과정은 3학기(6학기과정은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수료자 중 논문등록자 포함)(개정 2016.5.4.)
4. 사회복지·예술대학원 :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수료자 중 논문등록자 포함)(개정 2014.6.30.)(개정 2016.5.4.)
5. 교육대학원 :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수료자 중 논문등록자 포함)(개정 2016.5.4.)

제14조 【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험시기】 자격시험의 시행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매년 3월, 9월

2. 종합시험 : 매년 4월, 10월

제16조 【시험과목】 자격시험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영어, 독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개 언어를 선택한다. 단, 외국인은 모국어를 외국어로 택할 수 없다.(개정 2013.12.4.)
2. 종합시험 : 개설되었던 교과목 중에서 3개 과목 이상으로 시행하며,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가 교과목을 선정하여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단, 예술대학원의 경우 실기 과목은 자격시험의 과목에 포함될 수 없다.(개정 2013.6.14.)

제17조 【출제위원】 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 【채점위원】 자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심사한다.

제19조 【합격판정】 자격시험의 합격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종합시험: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0조 【재시험】 ①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동일 학기 내 1차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단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재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으며, 불합격된 과목만 재 응시한다.(개정 2013.6.14.)

제21조 【외국어시험 면제】 ①외국어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공인검정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자로 입학 또는 재학기간 중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기준점수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영어 : TOEFL, TOEIC, TEPS
2. 독일어 : ZD, ZMP
3. 불어 : DELF
4. 일본어 : JPT
5. 중국어 : HSK
6.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외국어 검정시험

②외국인학생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갖춘 자

③각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외국어 과목을 수강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제22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로서 평균평점이 B학점(3.0)이상인 자
3. 학칙 제17조에 정한 수업연한에 대한 등록을 필한 자

4. 교육대학원의 경우 위 각호의 조건 이외에 교직과목, 전공교과목(기본이수 과목 포함)을 포함하여 26학점이상 이수한 자로서 자격검정의 합격기준(평균평 점 3.0)을 갖춘 자(개정 2013.6.14.)

5. 학위과정 수료자로 입학으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을 초과 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는 자는 학위논문제출 및 심사자격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5.4.)

제23조 【학위논문대체】 ①학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청구논문대체 유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14.)

1. (삭제 2014.6.30.)

2. 신학대학원 : 학위취득시험 또는 목회프로젝트(개정 2014.6.30.)

3.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 학위청구논문대체 전공교과목 학점취득

4. 예술대학원 : 학위청구논문대체 전공교과목 학점취득 또는 졸업작품(연주)

②학위청구논문 대체과목의 세부 교과목은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제2호에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 하여 시행한다.

제24조 【제출절차 및 구비서류】 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일 안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6.14.)(개정 2014.6.30.)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3. (삭제 2014.6.30.)

4. 심사용 청구논문 <석사 3부>, <박사 5부>

(조개정 2013.12.4.)

제25조 【학위논문 작성 용어】 ①학위 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국문초록과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작성시 원어 및 한자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기재하 여야 한다.

제26조 【논문지도교수 위촉】 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의 위촉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27조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 지도교수와 변경할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나 인접분야의 교수 혹은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학위논문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은 교체 및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학위 청구논문 심사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학위 청구논문 심사일정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30조 【학위논문 심사방법】 ①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등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심사는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자에게 논문작성과 관련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를 수합하여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논문심사 합격판정】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는 2인 이상, 박사학위는 4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재심을 요구할 경우 재심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논문완성본 제출】 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소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Hard Cover) - 5부(심사위원 날인)
2. 학위논문제출확인서 - 1부(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3. 학위논문저작권동의서 - 1부(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제6장 공개강좌, 연구생, 특별수강생

제34조 【공개강좌】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제35조 【연구생】 ①석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연구를 희망할 때에는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연구생은 대학원 수업에 출석할 수 있다.

③연구생에게는 필요한 경우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연구생의 등록비는 이 세칙 제4조에 따른다.

제36조 【특별수강생 중 교단위탁생】 ①「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167] 제66조(연회 준회원의 자격)에 의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과정의 학생은 감리교회사, 감리회교리와장정, 교회성장학, 웨슬리신학, 웨슬리영성수련, 전도학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③위탁과정의 학생은 감독회장(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위원장)추천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1학점당 등록금의 1/18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전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 당시 각 대학원 재학생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개정 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의3 2호와 제3호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